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재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413

발의연월일: 2024. 11. 11.

발 의 자:이재관·박선원·장종태

김종민 • 박지원 • 박희승

박수현 • 이언주 • 이광희

이병진 • 정진욱 • 송재봉

오세희 • 강준현 • 양부남

민형배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,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로 하여 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증가하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나 충전기 등으로 인한 화재가 급증하고 있고, 화재의 특성상 화재를 진 압하기 어렵고 그 피해가 심각해 소화설비 시설 설치 등 개선이 필요 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.

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하부 스프링클러, 소화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전기자동차 사용 환경을 조

성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(안 제11조의2제13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부 스프링클러, 소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시설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1조의2제1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화설비 등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	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
전용주차구역 등) ① ~ ⑫ (생	전용주차구역 등) ① ~ ⑫ (현
략)	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◎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
	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
	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
	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
	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부
	스프링클러, 소화설비 등 대통
	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
	설치하여야 한다.